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53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김영진·박홍배·조 국

임호선 · 서삼석 · 김남희

정일영 • 안도걸 • 황명선

박홍근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회에서의 안건심의, 국정감사·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「국세기본법」에서는 국정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되어 있음.

국회의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감시·통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고, 개별납세자료는 세법안 심사,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, 국회의 입법활동을 위하여 상세한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. 특히,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보다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음.

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,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정조사만 과세정보 제공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나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, 「국회법」에 따른 안건 심사, 「인사청문회법」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13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공할 수 있다"를 "제공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8. 국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, 조사위원회, 특별위원회, 인사 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 - 가.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
 - 나. 「국회법」에 따른 안건 심사
 - 다. 「인사청문회법」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1조의13(비밀 유지) ① 세무공 제81조의13(비밀 유지) ① ---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•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 한 자료 등(이하 "과세정보"라 한다)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 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----제공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8. 국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법률 | 제3조에 따른 조사위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의 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회, 조사위원회, 특별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 위원회,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가.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

한 법률」에 따른 국정감

 사 및 국정조사

 나. 「국회법」에 따른 안건

 심사

 다. 「인사청문회법」에 따른

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

 인사청문

 9. (생략)

 9. (현행과 같음)
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